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출입국관리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법무부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입국 심사 시간의 단축을 위하여 입국신고서를 전자화된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, 방문취업(H-2) 체류자격 활동범위 확대에 대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그간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관련 하위법령을 개정하고자 함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의2를 제15조의3으로 하고,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의2(온라인에 의한 입국신고서 제출) ①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설치·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입국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정보통신망 설치·운영 및 입국신고서 제출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.

별표 1의2 제29호나목 2)의 라)부터 사)까지를 각각 마)부터 아)까지로 하고, 같은 란 차) 단서 중 “업체”를 “업체 또는 비수도권 소재 뿌리산업 중견기업”으로 하며, 3)의 라) 단서 중 “육상 여객 운송업(492)은”을 “다음의 산업분야는”으로 하고, 같은 란에 (1) 및 (2)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3)의 사) (3)을 (4)로 하고, 같은 란에 (3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라) 임업(020) 중 임업용 종묘 생산업(02011), 육림업(02012), 벌목업(02020), 임업 관련 서비스업(02040). 다만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산림사업시행업자 중 법인사업체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제16조에 따른 종묘생산업자 중 법인사업체에 통계청장이 작성·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임업 단순 종사원(99102)으로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.

(1) 육상 여객 운송업(492)

(2) 택배업(49401). 다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업체에 통계청장이 작성·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 종사원(92101)으로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.

(3)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(52939). 다만,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2호에 따른 항공기하역업체에 통계청장이 작성·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 종사원(92101)으로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u><신 설></u>	<u>제15조의2(온라인에 의한 입국신고서 제출) ①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설치·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법제12조제1항에 따른 입국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.</u> <u>② 제1항의 정보통신망 설치·운영 및 입국신고서 제출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.</u>
<u>제15조의2 (생략)</u>	<u>제15조의3 (현행 제15조의2와 같음)</u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법무부 외국인정책과	
연 락 처	(02) 2110 - 4116